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 동 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 동 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22년 1월 4일, 국회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방재신기술 조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는 재난안전신기술 제도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는 건설공사의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존 자문 대상이었던 방재신기술이 자연재해 중심에서 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위원회의 재난 관련 자문 범위 또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